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32

2025. 11. 26.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6. 우종혁 의원 등 6인

나. 상정의결

-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6.)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우종혁 의원)

가. 제안이유

○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관계성 범죄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안전망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안 제3조 및 제4조)

○ 사업 및 예방 교육 등(안 제5조부터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안 제7조 및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 우종혁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성 범죄등”에 대해서도 그 예방과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입법 배경 및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몇 년 사이 이른바 ‘교제폭력’으로 대표되는 관계성 범죄가 중대 범죄로 인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관련하여 여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제도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한편, “관계성 범죄”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경찰과 형사사법 학계에서 “가족, 보호자, 연인 등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인간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 예를 들면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를 관계성 범죄라고 부르고 있음. 즉, 현재로서는 관계성 범죄가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정책 추진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관계성 범죄는 “관계” 기반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 자칫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을 폭넓게 접근하려는 본 개정안은 강남구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관계법령상의 지자체의 피해자 보호 책무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보임. 다만, 조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 방안 마련 및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마련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구성 체계 및 기본적인 내용은 현행 조례와 유사하며, 제명과 조례 전반에 걸쳐 “관계성 범죄등”의 용어를 추가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였음.

○ 안 제2조(정의)제2호에서는 “관계성 범죄등”에 대하여 “관계성 범죄등”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지속되는 특성이 있거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고 규정함. 즉, 제정안에서는 ‘관계성 범죄등’의 범위를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교제폭력의 경우 법적으로 개념이 정립된 사항은 아니나 최근의 범죄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필요시 강남구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개념을 폭넓게 정의한 것으로 이해됨.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임.

○ 그 밖의 문장을 명확히 하고 용어의 띄어쓰기 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며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2. “관계성 범죄등”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지속되는 특성이 있거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관계성 범죄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2. “관계성 범죄등”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삭 제>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